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불출석 시 다음 월 수당 등 감액〉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40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정아 · 박홍배 · 진성준 · 정진욱 · 백승아 · 김남근
이재관 · 양부남 · 문금주 · 박희승 · 복기왕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4. 6. 10.

3. 회 부 일 : 2024. 6. 11.

※ 의안번호 : 24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임.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어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청가,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

의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 대표로서의 직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수당 등의 감액) ① 국회의원이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1. 「국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출석정지된 경우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 4.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 5.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결석한 회의 일수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수당 감액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1)을 삭제한다.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에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있음²⁾.

[표-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등

구 분	근거조항	지급목적	지급성격	비고
수당*	제7조	매월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금전	급여 (매월지급)	*회의 무단 불출석시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특별활동비 감액
입법활동비	제11조	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지급	지원 경비 (매월지급)	*국회법 §163조①에 따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시 출석정지 기간동안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1/2감액 ³⁾
특별활동비	제12조	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제13조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	경비 (청구에 의하여 지급 등)	*정액 지급 경비는 출석 또는 정계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여비	제14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 시 지급		

* 기존의 세비(歲費)라는 용어는 「(구) 국회의원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회의원에게 국무위원이 받는 보수와 동액의 세비를 지급한다”라는 규정에서 사용되었으나, 현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세비 대신 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

- 1)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11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제12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제13조(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3) 국회법 제163조제2항은 제155조제8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제10호(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제11호(회의장 출입방해)로 인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경우에는 수당등의 1/2을 2개월 간 감액하고, 출석정지의 경우에는 수당등을 3개월간 미지급하도록 정함.

참고로, 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금전이고, 입법활동비는 입법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며, 특별활동비는 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회기 일수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회기 중 지급함.

현행 「국회법」은 의원의 국회 불출석 및 징계로 인한 출석정지 등의 경우에 대한 수당 등의 감액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의원이 청가서나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석한 경우에는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제32조제2항)⁴⁾, 결석 시 특별활동비 감액의 대상이 되는 회의의 종류에 대하여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현재 본회의 및 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음.

한편, 징계로 의원의 출석이 정지된 경우 등에는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제163조제1항제3호)⁵⁾.

4)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024년도 기준, 불출석 회의 1일당 31,360원의 특별활동비를 감액 지급하고 있음.

5)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안은 의원의 무단 불출석 시 감액되는 금전의 범위를 수당, 입법 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로 확대하고 결석한 월간 회의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대상을 국회 본회의, 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로 명문화하는 등 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고 상시 국회 운영체제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월간 결석 회의 일수 1일당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도록 하는 것이 그 제재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법제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인 국회의원이 그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나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안 제9조의2제1항제3·4·5호)에는 청가서나 결석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수당 등이 감액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3] 안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2(수당 등의 감액) ① 국회의원이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1. 「국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출석정지된 경우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

4.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인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

5.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므로, 현행과 같이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결과적으로 개정안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국회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항 제3·4·5호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